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2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윤건영·모경종·박지원

이기헌 · 신정훈 · 김영배

최기상 · 소병훈 · 이인영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피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명 '강남 역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 병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있음. 그렇지만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

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3조).

법률 제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 흥주점영업의 영업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	제3조(적용대상) ①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4의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		
	업 중 유흥주점영업의 영업		
	<u>시설</u>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